

동 아 리 회 칙

[시행 2016. 3. 25.] [개정 2017. 3.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관광삼락(觀光三樂)’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관광경영과 전공동아리인 ‘관광삼락(觀光三樂)’는 관광경영과 전공 학술동아리로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관광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지식과 실습 습득
2. 국내외 관광자원 답사를 통한 관광상품 발굴
3. 다양한 국내외 관광 관련 공모전 참가
4. 기타 전공과 관련된 활동

제 3 조 (소속)

본 회의 소재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개정 2017. 3. 24.>

본회의 회원은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 목적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 3. 24.]

1. 관광경영과 재학생
2. 타의 모범, 품행 단정한 자
3. 성적 3.0 이상자 (2학년에 한함)
4. 공익토익점수 제출 가능자 (2학년에 한하며 가입신청 후 5개월 내)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준회원 : 매년 초 입회절차를 거쳐 활동하고 있는 신입생과 전체학생으로 한다.
2. 정회원 : 준회원을 거친 자로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심사 후 정회원으로 확정한다.
3. 명예회원 : 본회의 정회원으로 졸업생에 한한다.

제 6 조 (회원가입)

신입회원은 관광경영과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개정 2017. 3. 24.>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충실하며 본회의 영원한 지속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본회의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기타 임원에 제반 건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매년 초 종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본회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임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탈퇴)

1. 본회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칙 및 제반 규칙을 위반한 자는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원에 의하여 탈퇴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2회로 하며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2. 임시집회 :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여 이를 모두 회장단이라 지칭한다.

제 12 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 장 : 본회의 대표자로 회칙을 준수하며 회의 존속을 위하여 회를 충실히 이끌어 나가며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조하여 회를 이끌어 나가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대행인으로 권리를 가진다.
3. 총 무 : 본 회의 회원관리 및 회원들에게 회의소집을 위한 연락 등 회장의 임무를 돕고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임원과 회원 간의 상호조화를 위해 힘쓴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를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궐선거는 임시집회 및 정기집회 시 하고 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선출된다.
3. 회장의 선출
 - i) 회장은 본 회에 충실하며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자로 1학기 이상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ii) 회장의 선출은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하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다.
4. 부회장의 선출
 - i) 부회장은 1학기 이상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의 출석 하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다.
5. 총무의 선출
 - i) 총무는 1학기 이상의 정회원 및 준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6 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8월 정기총회시 할 수 있다.

회칙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 하에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8 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